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4

발의연월일: 2020. 6. 23.

발 의 자: 송옥주·박찬대·안호영

정춘숙・유동수・임종성

박용진 · 서삼석 · 박 정

임오경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.

그런데 도로공사가 있으면 차로가 변경되는 등 교통 흐름이 방해받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,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차마와 보행자의 통행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안전요원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,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교

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69조제3항 및 제154조제7호).

법률 제 호

#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3항 중 "설치하여야 한다"를 "설치하여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"로 한다. 제154조제7호 중 "설치하지 아니하거나"를 "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(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	제69조(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
조치 등) ①・② (생 략)	조치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	③
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	
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	
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	
라 교통안전시설을 <u>설치하여야</u>	<u>설치하여야</u>
<u>한다</u> .	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
	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
	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
	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
	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5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54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	
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	
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	7
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	
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	
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	
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	

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	설치하지 아니하거나
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	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
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	<u>는 사람 또는</u>
한 사람	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